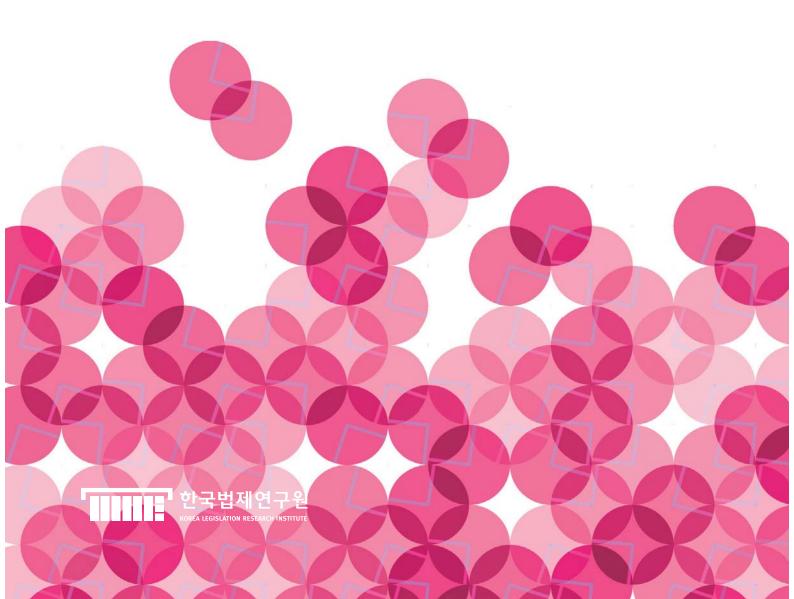
제 7 차 기후변화법제포럼

2014. 10. 2.



제 7 차 기후변화법제포럼

2014. 10. 2.



일 정

□ 개 요

○ 일 시 : 2014년 10월 2일(목) 12:00~15:20

○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산호홀)

O 참석자:

○ 원 외

- 김해룡(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규림(자본시장연구원), 한기주(산업연구원), 최광림(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류권 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명수(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유종민(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이지웅, 정윤경(이상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신(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원 내

- 이준서, 홍의표, 김은정, 장은혜, 정지경, 이승빈 (이상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내 용
12:00~13:00	검토회의	▶ 제6차 포럼 논의 정리▶ 중 식
13:00~13:35	제 1 세션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명수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13:35~14:00		▶ 세션 토론

일 정

시	간	구	분	내 용
14:00~	14:35	제 2 세션	▶ EU탄소누출 현황과 전망 -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4:35~	15:00			▶ 세션 토론
15:00~	15:20			▶ 종합 토론
15:3	30	폐	회	

목 차

【제 1 세션】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 명 수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법제조사팀장) 9
【제 2 세션】
◎ EU탄소누출 현황과 전망
발표자 : 이 지 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25

제 1 세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명수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법제조사팀장)



녹색금융 왈정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은앵 법제조사팀장 김 명 수

★ KDB산업은행

CONTENT

- i. 들어가며
- Ⅱ. 녹색금융의 연왕
- Ⅲ. 녹색금융에 관안 해외 동양 및 법제
- IV. 녹색금융에 의한 까본꼬달 사례
- V. 녹색금융 왈정와를 위안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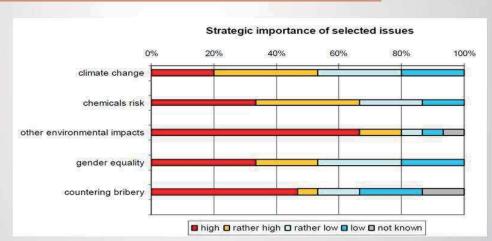


Ⅰ.들어가며

- ◆ 지구온난와 → 기상이변 → 완경문제 부각
- ◆ 꺼탄소 사외구연을 통안 국민의 삶의 필 양상
- ◆ 2010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 2012년「온실가스배 즐권 알당 및 거래에 관안 법률」제정
- ▶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금융지원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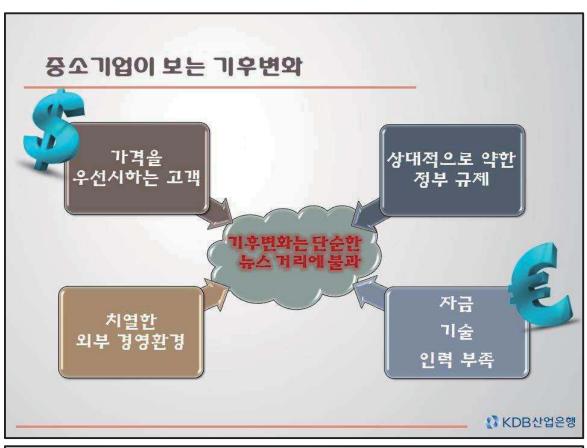
★ KDB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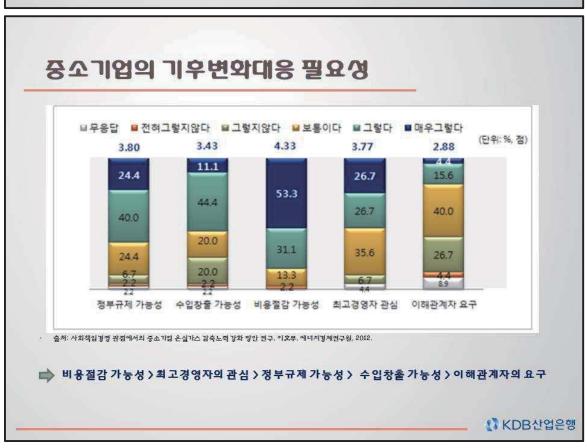
기우변와에 관안 중소기업의 관심도



· 養料: RARE Project. 2006. CSR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Evidence from a Survey of the Automotive Supply Chain in Hungary and Austria

➡ 화학물질 관련 위험성 및 기타 환경적 영향 > 기후변화





Ⅱ. 녹색금융의 연황

- ◆ 녹색성장은 2005년 지옥가능발전의 실천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외위원의 (UNESCAP)에서 '완경적으로 지옥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단계에서 완경오염을 방지하면서 빈곤극복 방안으로 논의
- ♠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시어티브에 의하면 '녹색'은 사회적 · 윤리적 · 환경적 관행
 과 관련된 광범위안 것으로 특히, 완경지양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국안
- 녹색성장이란 지금까지의 산업발전 과정에 녹색기술 · 지식을 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
- 고, 신째생에너지ㆍ째활용에너지 등의 활용으로 생산력 제고 및 경제성장 도모
- ◆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거버넌스 역할을 수● 행하는 금융이 녹색금융

★ KDB산업은행

녹색금융의 동양

-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기관 선언문'
- · 2009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녹색경제는 에너지 효율 제고,고용 창출,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는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며 녹색금융 지원
- UNEP에서는 '그린경제이니시어티브'를 통하여 7,500억 달러 녹색산업투자계획 발표
- UN과 ISO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강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

- ·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수익과 투자 기회 창출
- 과거의 산업형 구조를 친환경적 구조 전환

녹색금융의 의의

- ▶ 녹색성장은 째무쩍 위엄과 수익을 기초로 정의되어 온 금융법에 완경이란 요소의 토입
- ◆ 전통적인 금융법원칙상 금융업까(집압투까업까)는 투까까의 재산적 수익의 최대와 도모,
 그러나 녹색금융의 사외적 책임투자에서는 재산적 가치 이외의 완경적・사외적・지배구
 쪼잭 요소에 대안 고려 요구
 - 완경정보의 공시 등을 통안 전통적인 외계공시제도 변와 요구
- **※이에 금융업무에 환경정책의 수행과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목표 달성**
- ◆ 녹색금융의 범위는 '녹색산업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녹색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 등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발전 추구

★ KDB산업은행

기업의 사외적 책임 (CSR)

- 기업의 본질은 영리성 추구로 투자자에게 이익분배 실현
- 이익배당제도, 깐여째산분배, 사채권자에 대한 이자 배당 등
- 영리성 보장을 위한 기업의 목적 제한 (회사의 활동범위 제한)



- 1970년대 이후 기업의 사외적 책임론 대두
- 채건자,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이익 고려
- 20세기 이후 사외적 책임의 범위 확대로 소비자, 지역사회, 종업원, 엽력기업, 일반사회에 대한 기여
- 기업의 사외적 책임의 법제와 주장 대두
- 특별법상 노동까보오의무, 소비까보오의무, 지역환경보오의무 등
- 일반규정의 통안 법원의 애석 규범

() KDB산업은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
- UN 세계엽약(Global Compact)
- EU의 책임경영에 관안 지침
- ISO 26000
- 국제법적 기준의 사회적 책임
 - 다국꺽기업의 노동쪼건, 완경 등에 관안 기업의 사외꺽 책임
- 국제법적 자원에서 강제성 여부의 안계
- 국내법적 기준의 사외적 책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조 제1항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완경에 관한 사외적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요구
- 실질적 실천에 있어서의 기업의 사외적 책임의 안계
- 사외적기업육성법과 같은 사외서비스왁중과 인규 일까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변화

★ KDB산업은행

사외책임투자 (SRI)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와 연상 예소 방안
- 투까대상기업과 투자수준 결정에 있어 통상의 째무적 지표에 추가아여 장기적 관점에서 비째무적 요소, 특이 완경, 사회공언, 지배구조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앵수준까지도 감안아는 투자 방식
 - 비깨무쩍 목표 실연은 소극쩍 검토방식과 쩍극쩍 검토방식, 주주권앵사방식 등
- 대출자책임은 은행 등에 관아여 일정안 완경책임을, 사외적 책임투자는 자본시장에서 집압투자기구 운용업자들을 중심으로 비째무적 요소까지 고려암으로써 일정한 거버넌스 기능 수행
- 순수 민간편드에 의한 투자와 연기금에 의한 투자로 구분
 - 연째 민간편드에 의한 사외책임투자보다 연기금에 의한 사외책임투자가 더 적극적
 - 우리나라의 사외책임투자규모는 아직 미미아나 최근 큰 상승세
 (2007년 4천억원선에서 2014년 1월 7조 7천억원으로 성장, 국내 주식투자 81조 7,7107억원의 7.7% 수준)





Ⅲ. 녹색금융에 관안 해외동양 및 법제

▶ 녹색금융에 관한 국제업약

-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OIO) 'UNEP FI')
-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 라인(이야 'GRI')
-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0)0 'ISO') 26000
- Carbon Disclosure Project (OIO) 'CDP')
- · Equator Principle

- 세계은앵의 완경평가 업무지침 제1조

"은앵은 짜금지원사업을 위아여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가 완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겨움 물건이고 외사결정을 선하기 위아여 모든 프로젝트의 완경평가를 요안다"

: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에서도 동일한 요건 채택

-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이니시어티브

- : 환경 및 지속가능성장에 대안 금융기관 약쟁서' 보엄업에 의안 완경 약쟁서
- 국제금융공사의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
- : 프로젝트파이낸스에서 완경 및 사외적 이슈 관리를 위아여 완경적·사외적 기준을 제시아고, 미충쪽시 프로젝트에 대안 자금 지원 금지

★ KDB산업은행

♦ 미국의 녹색금융

- 2009년 Green Bank Act Bills
 -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효율와 프로젝트에 대안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녹색 은영의 설립을 위한 법
 - 동 법안에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100억 달러 상당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깨무부장관이 발행할 수 있음

♦ 일본의 녹색금융 정책

- · 2009년 4월 20일 일본 완경성은「녹색경제와 사외개역」을 통하여 2020년까지 태양광발 전 등 완경비즈니스시장을 120조엔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고용은 280만명까지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 2002년 3월에는 「금융업에 있어서의 완경배려행동에 관한 쪼사연구보고서」
 - 2006년 7월에는 「완경 등을 배려안 연금으름의 확대를 양하여」라는 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을 통안 경제성장에 대안 목표를 제시

「지구온난학문제에 관안 간담의 제언: 저탄소사의 · 일본을 목표로」에서「저탄소사의구 숙행동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는「완경비즈니스 등에 자금유입을 원활이 하기 위안 기준과 시스템의 정비」가 포함

() KDB산업은행

Ⅳ. 녹색금융에 의한 까본쪼달사례

- 케나다의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이야 'SDTC')
- · 10억 5천달러를 투입하여 설립한 독립 기관
- · 국민에게 건강한 환경과 양질의 삶 구연을 목적으로 함
- · SD Tech Fund: 기우변와, 공기질,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 NextGen Biofuels Fund: 차세대 재생가능 연료의 대규모 생산설비 설립 지원

★ KDB산업은행

◈ 프랑스의 녹색금융/지원/제도

- Founds de Garantie des Investissements de Maitrise de l'Energie(이하 'FOGIME')는 중소기업의 압리적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지속가능성 분야의 투자에 특 약된 편드
 - 1,780만 유로에 이르며, 중소기업개발은앵이 940만 유로, 완경에너지관리국이 840만 유로 부당
 -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하여 70%까지 보증, 제생가능에너지 44억 유로, 에너지요율성 62억 유로 투자
 - 중소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보증
 - 대출 최대액은 75만유로

BNP Paribas에서는 사외적 책임차원에서의 녹색금융을 지원으로 투자결정시 프로젝트 파이낸스팀에 Equator Principle 적용여부 사전 검토

♦ 영국의 녹색금융지원제도

- · 2005년 UNFCCC 기우변화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투자 등 기우변화 관련 녹 색펀드 등을 다루는 녹색자산운용사 Climate Change Capital 설립
 - CDM 사업을 바탕으로 중국 북경을 시작으로 안국 등 동남아시아까지 시장 확대 계획
- 2011년 30억 파운드 규모의 Green Investment Bank(GIB) 설립
 - 2015년까지 150억 파운드로 성장 계익
 - 철도, 해양, 풍력발전, 친완경폐기물 관리 등 녹색사업과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과 기업에 금융 지원의 인센티브 제공
 - 폐기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8.000만 파운드 투자

2012년 신째생에너지 기술분야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1억 300만 파운드 규모의 신째생에너지 투자기금술범 발표

★ KDB산업은행

♦ 일본의 녹색금융지원제도

- · 환경인증 취득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녹색금융상품인 ECO 21
 - 금융기관이 융짜를 하는 경우 환경인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 · 카본 오프셋
 - 정기예금금액의 일정비율(0.1%)분의 배출권을 은행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정부에 이 전
- · 완경을 테마로 하는 투자상품으로 친완경펀드인 에코펀드

◆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지원제도

- · 2000년대 조반부터 녹색금융관련 상품 출시
 - 2001년 삼성투신운용이 수익성과 완경보호의 결합, 완경 관련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적정 수익률 악보, 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완경감시 역할 및 사외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에코펀드 발매
 - 신안은앵 '신안솔라파워론' 등 녹색성장산업 관련 대출 상품 판매
- · 2009년 녹색금융에 관련하여 42개의 장품이 출시되었으나, 연재는 녹색금융관련 수 신 상품은 5개에 불과
 - 쟁권의 요구에 맞추어 금융기관들이 상품 출시에 급급하여, 수요분석의 실패의 결과
- 특히, 관련 산업의 경제성과 경쟁력 등의 미검증으로 인하여 여신 실적의 제조, 상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주세

() KDB산업은행

♦ 탄소배출권의 파생상품

- · 탄소배출권은 자본시장법 상 기초자산(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연상 등에 속 하는 위험)에 포함된다고 이해됨
- ·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 중째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
 - 까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투자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이 라고 규정(까본시장법 제6조 제5앙)
 - 탄소배출권도 '깨산쩍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서 투자 가능
- · 탄소배출권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여부
 -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째산(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양)은 ① 금전, ② 증권, ③ 금전 채권, ④ 동산, ⑤ 부동산, ⑥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보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⑦ 무체째산권으로 규정

- 이는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판단

∨ . 녹색금융활성와를 위안 개선방안

◆ 녹색금융 관련 국내 법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시책 (제28조)	-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과 지원(제29조)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며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 자회사 설립 -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31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록세 등 감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제46조)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설정 및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국제협상 및 경쟁력 고려		



★ KDB산업은행

◆ 완경관련 금융투자상품

- 완경적 연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완경관련 종복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안 집합투자증권으로 구분(자본시장법 제3,4,5조)
 - 기초자산의 범위에 완경적 연상 포함 여부(제단이나 자연제예약 같은 자연적 연상, 탄소배출이나 기후변약 등 완경적 연상, 물가상증률 등 경제적 연상 등
- ◆ 녹색산업투까외사
- · 녹색산업투자외자 설립 시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의 운용과 배분
 -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 녹색산업에 해당아는 사업,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



- ◆ 동법 제32쪼 및 동법 시앵령 제19쪼에 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앵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
 - 녹색기술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 인해주는 녹색기업확인제도로 녹색산업에 관한 지원에 있어 보다 절차상 효율화에 기여

[녹색인증 추진현황(2012년 12월 19일 기준)]

구 분	인증신청	인증확정
녹색기술인증	1,845	856
녹색사업인증	114	25
녹색전문기업	144	103
합계	2,103	984



☼ KDB산업은행

∨. 녹색금융활성와를 위안 개선방안

- ◆ 녹색금융 왈성와를 위안 정부의 역할 확대
-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의 프로젝트 지원 강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녹색기술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 평가 기준 및 기관 설립
- · 탄소배출권 시앵에 따른 탄소시장 왈성화



◆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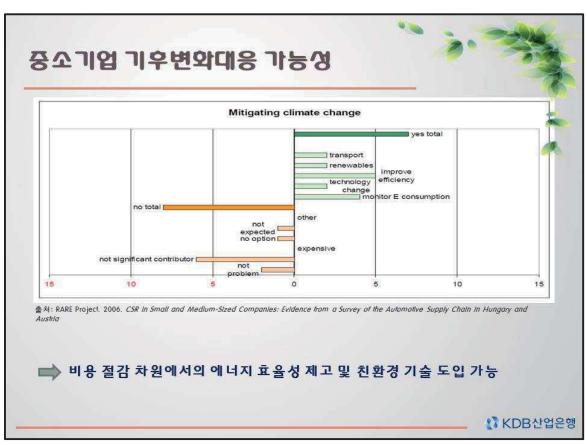
['은행 녹색금용 운용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구분	ив
	제5조(녹색예금 녹색채권의 명청)
상품개발 및	- 녹색예금 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제 녹색금융 포함
고객보호	제7조(설명의무)
	- 녹색예금 녹색채권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비과세 요건 한도 등 중요사항 기재 및 고객 설명
	제8조(녹색금융 관리체계)
	-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할 의사결정기구 설치 및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녹색금융	제11조제12조(심사 및 절차, 환경리스크 분석)
프로세스 마련	- 녹색금융 투자 및 지원 여부 결정 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리스크도 고려하여 분석
	제13조(금리 및 수수료)
	- 금리 및 추수료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은행자산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안는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지원기준 마련 및 운용
	제16조(리스크 관리체계)
녹색금융	- 리스크 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린 위험평가 및 관리
리스크 관리	제18조(사후관리)
	- 녹색금융 지원 후 자금의 용도 외 유용여부 및 사업현황 파악

국내 녹색금융상품 활성와 방안

★ KDB산업은행

- 기존 녹색금융상품의 한계
- 사업상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외수기간의 장기와 등 고려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앞선 해외 사례 참고)
- 완경리스크 연왕에 대한 감독
- 완경리스크에 관한 감독기관 설치 또는 전문성 강화
- 금융기관의 까발잭 엽약 유도
- UNEP FI, Eugator Principle 등 완경 관련 금융기관 엽약 등의 자발쩍 참여 유도
- 민간 차원의 녹색 투자 유도▲ GCF 재원의 민간투자 활성와 등 녹색 투자 강화





제 2 세션 EU 탄소누출 현황과 전망

발표자 :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ARBON LEAKAGE IN EUROPE

순 서

탄소누출 정의

EU의 탄소누출 현황

우리나라, 다른나라 탄소누출 판단기준

탄소누출이 있었나?

전망

탄소누출carbon leakage 정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 정의

- **✓ IPCC**: "The **increase in CO2 emissions** outside the countries taking domestic mitigation action divided by the **reduction** in the emissions of these count
- **OECD**: "Carbon leakage can be defined as the ratio of emissions increase from a specific sector outside the country (as a result of a policy affecting that sector in the country) over the emission reductions in the sector (again, as the resul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Reinaud,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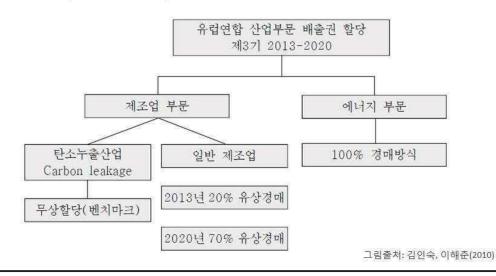
탄소누출Carbon Leakage 정의

EU: Recital 24 of the ETS Directive defines it as "an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ird countries where industry would not be subject to comparable carbon constraints"

EU의 탄소누출 현황

EU ETS 배출권 할당방법

- ****** 1기(2005-2007) 유상할당 5%이내
- **2**기(2008-2012) 유상할당 10%이내
- **3**√3 (2013-2020)



탄소누출목록Carbon Leakage List

- **☞**1차 탄소누출목록
 - ➤ 2009년 작성(2011-13년 갱신)
 - > 3기 초(2013-14)년 할당시 적용
- **☞ 2차 탄소누출목록**
 - > 5년 단위로 개정
 - ▶ 2015-19년 할당시 적용예정
 - ▶ 5월 초안 발표, 공동결정Co-decision을 통해 확정
 - ▶ 1차 목록 작성시와 동일한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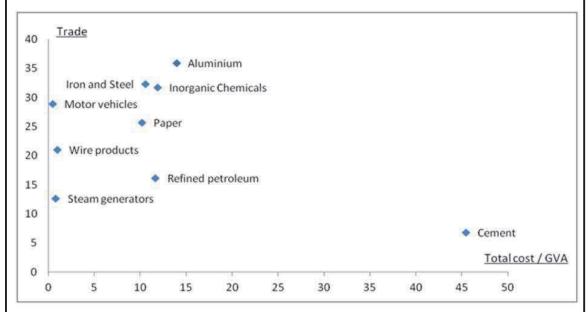
EU 탄소누출위험 판단기준

- 🤝 정의
 - ▷ [생산비용발생도] = (직·간접탄소비용)÷(총부가가치)

(가정 : 배출권가격 € 30)

- ▶ [무역집약도] = (수출액+수입액) ÷ (매출액+수입액)
- 아래 중 하나 이상이 성립하면 탄소누출 위험
 - ➢ (단일기준) 생산비용발생도 ≥ 30%;
 - > (단일기준) 무역집약도 ≥ 30%;
 - > (복수기준) 생산비용발생도 ≥ 5% 그리고 무약집약도 ≥ 10%

EU ETS Quantitative Criteria



출처: http://www.ceps.eu/system/files/u213/Andrei_Marcu_Presentation_December_10.pdf

1차 탄소누출목록Carbon Leakage List

ANNEX

Sectors and subsectors which, pursuant to Article 10a(13) of Directive 2003/87/EC, are deem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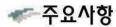
- 1. AT THE NACE-4 LEVEL
- 1.1. BASED ON THE QUANTITATIV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S 15 AND 16 OF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NACE Code	Description
1010	Mining and agglomeration of hard coal
1430	Mining of chemical and fertilizer minerals
1597	Manufacture of malt
1711	Preparation and spinning of cotton-type fibres
1810	Manufacture of leather clothes
2310	Manufacture of coke oven products
2413	Manufacture of other inorganic basic chemicals
2414	Manufacture of other organic basic chemicals
2415	Manufacture of fertilizers and nitrogen compounds

1차 탄소누출목록Carbon Leakage List

판단기준	업종 수
복수기준(생산비용발생도 5%, 무역집약도 10%)	13
단일기준(생산비용발생도 ≥ 30%)	2
단일기준(무역집약도 ≥ 30%)	117
복수기준 + 단일기준(무역집약도 ≥ 30%)	16
질적 평가Qualitative test	8
NACE-4 미분류 업종	20
기타	93
합계	258

2차 탄소누출목록



- ▶ 1차 목록과 동일한 기준 적용
- > 배출권 가격 가정 € 30를 그대로 유지
- ➤ 선발순서
 - 1. 양적평가
 - 2. 양적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해당산업계 요청시 질적평가



1차목록과 거의 차이가 없음

우리나라, 다른나라 **탄소누출** 판단기준

우리나라 탄소누출위험 판단기준

- 🦝 정의
 - ▷ [생산비용발생도] = (직·간접탄소비용)÷(총부가가치)

(배출권가격은 할당계획에서 결정)

- > [무역집약도] = (수출액+수입액)÷(매출액+수입액)
- ❤️ 아래 중 하나 이상이 성립하면 탄소누출 위험
 - > 생산비용발생도 ≥ 30%;
 - > 무약집약도 ≥ 30%:
 - > 생산비용발생도 ≥ 5% 그리고 무약집약도 ≥ 10%

호주 탄소누출위험 판단 기준(previously...)

	호주 CPR
정 의	배출집약도(Emissions Intensity, tCO2e/백만AUD) ① (탄소배출량) ÷ (총수익) ② (탄소배출량) ÷ (총부가가지) 무역집약도(Trade Intensity, %) ③ (수입액 + 수출액) ÷ (생산가지)
판단기준	배출집약도 高 배출집약(Highly Emissions Intensive): ① ≥ 2,000 또는 ② ≥ 6,000 中 배출집약(Moderately Emissions Intensive): ① ≥ 1,000 또는 ② ≥ 3,000 무역집약도 ③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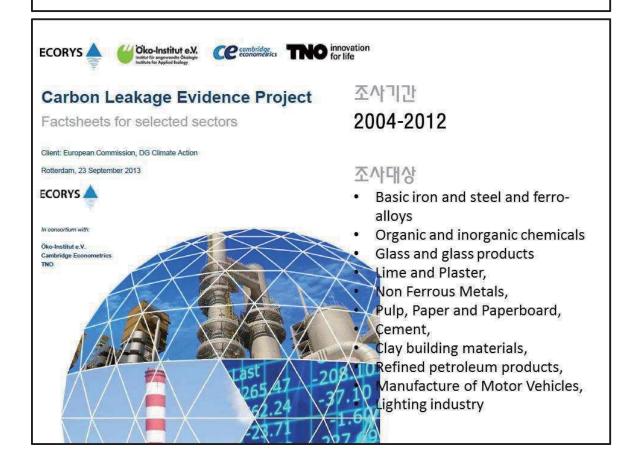
캘리포니아 탄소누출위험 판단 기준

	California Cap-and-Trade
정 의	배출집약도(Emissions Intensity, tCO2e/백만USD) ① (탄소배출량) ÷ (부가가지) 무역집약도(Trade Intensity, %) ② (Imports + Exports) ÷ (Shipment + Imports)
판단기준	배출집약도 高 배출집약: ① ≥ 5,000 中 배출집약: 4,999 ≥ ① ≥ 1,000 低 배출집약: 9990 ≥ ① ≥ 100 무역집약도 ③ ≥ 10%

뉴질랜드 탄소누출위험 판단 기준

	NZ ETS
정 의	배출집약도(Emissions Intensity, tCO2e/백만NZD)① (탄소배출량) ÷ (총수입)무역집약도(Trade Intensity)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을 무역집약적인 것으로 가정
판단기준	배출집약도 高 배출집약: ① ≥ 1,600 中 배출집약: 1,599 ≥ ① ≥ 800
A 400 F. B.	

그럼 탄소누출이 있었나?



탄소누출?

- **▼ ETS 1기**(2005-2007) : 탄소누출 미미not significant
 - ▶ 100% 무상할당
 - ▶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
 - ▶ 파일럿 기간
- FTS 2기(2008-2012) : 역시 미미
 - ▶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 > 상쇄배출권offset 사용가능
 - > 배출권가격 급락

'Carbon Leakage Evidence Project' 의 결론

- ↗ 조사 대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과다할당
- ► ETS-directive에서 정의한 탄소누출은 없었음
- ル 그러나, 역외 생산시설은 확장추세
 - 신흥시장 수요 대응
 - 투입물(노동, 에너지, 원자재)가격이 낮음
 - 규제비용이 낮음

전망(In My Humble Opinion...)

우리나라는?

- ▼ 단기적으로 탄소누출은 큰 문제는 아닐 것
- 불확실성
 - ▶ 2015년 기후변화총회 결과 : 2020년 후
 - ▶ 경쟁국의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
- **☞** 과제
 - ▶ 탄소누출위험 노출 판단 기준 재검토(시행령 개정)
 - ▶ 탄소누출 최소화 방안 강구

탄소누출 최소화 방안

- 국내조치
 - ▶ 무상할당(과거배출량, 벤치마크, 생산량 기준…)
 - ▶ 상쇄배출권 허용비중 상향조정
 - ▶ 전력사용이 높은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 > 국경조정Border Adjustment
- * 협력조치
 - >세계 단일 탄소시장One Global Carbon Market
 - ➤ 탄소시장 연계Linkage

1tCO2e in Seoul

= 1tCO2e in NY

= 1tCO2e in Paris

= 1tCO2e in Beijing

= 1tCO2e in Yamoussoukro

It's Linking, stupid!

- ☞ 연계를 통해 탄소가격제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해소 가능(Lanzi et. al., 2013)
 -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
 - ▶ 보다 많은 배출원emission resource을 포함
 - ▶ 감축정책 국제협력 강화

◆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As long as countries take such varied approaches to carbon markets, concerns about leakag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remain a significant stumbling block to ambitious climate change action in many OECD countries"

計削 Merci ありがと